

제43권 제5호 통권 325호 ISSN 0027-8572

국회도서관보

National Assembly Library Review

6
2006

기획특집 | 다문화 사회

Information & Resources | 전문도서관에서의 해외 학술지 평가를 위한 연구

내가 즐겨 찾는 사이트 | 선거의 모든 것, EPIC Project

어른들을 위한 동화 | 백조마을로 간 오리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

국회도서관보

National Assembly Library Review

- June
- 2006
- Vol. 325

기획특집 :: 다문화 사회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설동훈	02
유럽에서 다문화의 도전과 대응 김남국	04
미국의 다문화 정책과 교훈 김형인	16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 문제와 다문화 교육 김정원	29

Information & Resources ::

유비쿼터스 시대의 새로운 도시: u-City 김문구	40
전문도서관에서의 해외 학술지 평가를 위한 연구 정혜경 · 정은주	46
국회도서관 전자자원관리시스템 소개 한천구	55
내가 즐겨 찾는 사이트: EPIC Project 서복경	64

도서관 광장 ::

어른들을 위한 동화 백조마을로 간 오리 서정오	68
재테크의 첫걸음③ 펀드에 투자해 봅시다 임언선	72
영화산책 정신과 의사가 본 영화 '나비효과' 한덕현	79
살며 사랑하며 4박 5일간의 도쿄여행 이정연	82
행복한 책임기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박창현	86

소식 ::

국회도서관소식	90
신간안내	96
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소식	98
국내도서관계 소식	100
국외도서관계 소식	102
국회도서관 현황	106

「국회도서관보」 2006년 6월호(통권 325호)

ISSN 0027-8572 발행인 배용수 국회도서관장 편집인 문병철 기획관리관

발행처 국회도서관 150-70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전화 788-4128 팩스 788-4291

홈페이지 www.nanet.go.kr

편집디자인 (주)신생커뮤니케이션(02-2268-5396)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설동훈 |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다문화 가족이란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족을 지칭한다. 한국에서 다문화 가족의 형성 패턴은 굴절된 현대사와 맥을 같이 한다. 첫째, 1950-1970년대의 국제결혼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한국에 주둔한 미군 병사 남성과 한국인 여성의 결혼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들은 미군 기지촌 주변에서 가정을 꾸려 생활하거나, 본국으로 귀환하는 가장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미국의 풋볼 영웅 하인즈 워드의 가족이 이 유형에 속한다.

둘째, 한국의 경제력이 신장된 1980년대 이후에는 외국인의 국내유입과 한국인의 해외진출이 증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 남성 전문직 종사자와 한국인 여성의 결혼이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하였다.

셋째, 1980년대 말, 이른바 '북방정책'을 통해 중국·소련과의 교류가 시작되었고, 그 후 1990년대 초 국내에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국제결혼을 추진하면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95년 한국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방문을 엄격히 규제하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제결혼을 택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 1995년 이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 유형이 그 반

대 유형보다 더 많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02년 이후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다. 수많은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1980년대 말부터 국내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과 결혼한 사례도 발견된다. 그 유형은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국제결혼이 주류를 차지한다.

지금까지 한국인들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태도는 결코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혼혈인이라 불리는 '다문화 가족의 자녀'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특히 배타적이다. 그들은 학교 중도 탈락자의 비율이 매우 높고, 직장을 찾거나 배우자를 구할 때에도 차별을 받고 있다. 그들은 혼혈이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모가 약간 다르다는 이유로 한국사회에서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한국인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배타적 태도는 다음 두 가지 요인과 관련이 있다. 우선, 피부색과 생김새가 많이 다른 외국인과 어울려 산 적이 없었던 한국인들에게,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족은 호기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순수혈통을 중시하는 태도가 자리 잡고 있었던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가족

모든 한국인들이 다문화 가족이 한국사회의 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는 구성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려는 노력을
다함께 경주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선진복지사회가 이 땅에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은 존중(尊重)·경외(敬畏)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비하(卑下)·멸시(蔑視)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직업과 빈부에 따라 귀천을 따지는 관행이 존속하였는데,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들이 대체로 사회·경제적 하층에 속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다문화 가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요즘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랑하는 사이라면 외국인과도 결혼할 수 있다고 응답하는 사람의 비율이 응답자의 과반수를 상회하고 있다. 2005년 혼인신고 건수 중 국제결혼이 차지한 비율은 14%였다. 이제는 국제결혼이란 한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정도가 되었다.

정부에서도 '결혼이민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그들의 한국사회 통합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

다. 교과서에서 순혈주의(純血主義)를 강조하고 있다는 반성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각종 제도적 차별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제도적 차별 철폐와 아울러 한국인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생활상의 차별 철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한국인이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바라보는 차갑고 따가운 시선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바뀌어야 한다. 모든 한국인들이 다문화 가족이 한국사회의 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는 구성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려는 노력을 다함께 경주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선진복지사회가 이 땅에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에서 다문화의 도전과 대응

김남국 |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정치학 전공

1. 다문화 사회의 기원

이제 다문화 사회라는 말은 우리사회에서도 익숙한 용어가 되어 가고 있다. 최근 우리의 현실은 한국 사회가 정치권력이나 경제적 분배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다수 중심의 전통적인 갈등 이외에도, 사회적 소수의 문제제기를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많은 통계지표들이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예컨대, 2004년 우리나라 총 결혼건수의 11.4퍼센트인 35,447건은 외국인과의 결혼이었고, 2005년에는 13.6퍼센트인 43,121건이 외국인과의 결혼이었다. 농촌총각의 경우에는 27.4퍼센트가 외국인 신부와 결혼하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2세의 교육문제는 심각한 주제로 종종 매스컴에 오르내린다. 우리사회 소수인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는 2005년 말 35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상당부분 겹치는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 가정, 그리고 그 자녀들을 포함한 소수인종의 비율은 적게는 우리나라 총 인구의 1퍼센트에서 많게는 2퍼센트까지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규모는 새로운 인종과 문화, 그리고 종교의 유입이 사회문제화 하기 시작하던 1960년대 후반의 유럽과 비슷한 수준이다.

오늘날 전지구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 다문화 사회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처럼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를 가졌던 전통적인 국민국가들이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에 따른 이주노동자와 낮은 문화, 그리고 새로운 종교의 유입과 함께 다문화 사회의 도전에 직면한 경우이고, 둘째는 캐나다나 미국처럼 출범 초기부터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구성된 이민자의 나라였던 경우로서 이들은 상대적으로 다문화 사회의 도전에 익숙하지만 여전히 이들 나라에서 사회통합의 문제는 심각한 주제가 되고 있다. 단일민족과 단일문화를 자랑하던 우리나라는 첫째의 경우와 가깝다.¹⁾

많은 사람들은 다문화 사회의 등장을 '차이에 대해 관용하는 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한 시대' 정도로 이해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인식의 이면에는 문화나 인종을 기준으로 할 때 내가 이 사회의 다수의 일원

1) 김남국, 2005. 다문화시대의 시민: 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45(4): 98.

으로 남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전제하고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에게 익숙한 시간과 공간안에 머물고 싶어한다. 따라서, 오랫동안 익숙해 있던 공간에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의 등장이 공포스럽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존중이 사람들 사이의 차이에 근거해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국민국가들은 결국 이 모든 변화의 최종 결정요인이 숫자라는 사실을 일찌감치 파악했다. 다수의 지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서구의 모든 나라들은 소수의 숫자, 특히 이주노동자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국내의 낮은 출산율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라는 내부의 유인요인, 그리고 저임금을 선호하면서 국경을 넘는 자본의 우월한 지위 때문에 어떤 나라도 소수의 증가를 완벽하게 통제하지는 못한다.

유럽에서 다문화주의가 전면에 등장하는 과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사회적 소수의 숫자가 일정수준 이상 증가하여 임계점에 도달하는 것이다. 대체로 이 단계에서 사회적 소수는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다.”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수와 똑같은 권리를 갖는 동등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다수와 동등한 사회경제적 대우를 요구한다. 둘째는 이들이 경제적 인정에 그치지 않고 문화적 생존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사회적 소수는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다.”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다수와 다른 자신들만의 문화차이를 공공영역에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사회적 소수의 종류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

다. 하나는 소수민족(national minority)이고, 다른 하나는 소수인종(ethnic minority)이다. 소수민족은 과거 역사에서 정복이나 조약, 병합 등을 통해 다수민족에 통합된 경우로써 이들은 훨씬 전투적으로 정치적 자치나 완전 독립을 요구하고 문화 보존의 권리를 주장한다. 반면, 소수 인종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이민을 택한 사람들로서 새로운 사회에서 정치, 경제적 성취와 주류사회로의 편입을 꿈꾸지만, 정치적인 분리나 자치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영국의 경우에는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구교 주민들이 소수 민족에 속하고, 영연방 회원국인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에서 이민 온 아시아인들과, 자메이카, 바하마 등에서 이민 온 카리브해 흑인들이 대표적 소수 인종에 속한다. 프랑스는 코르시카, 부르타뉴, 알사스, 바스크 등지의 소수민족이 있고, 한때 식민지였던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등에서 이민 온 아랍인들과 세네갈 출신의 흑인들, 그리고 베트남 등에서 이민 온 아시아인들이 소수 인종을 이루고 있다.

2. 다문화 정책의 세 단계

유럽이 사회적 소수의 유입과 함께 다문화의 도전에 직면했을 때 대응해 왔던 방식은 크게 세 단계의 변화양상을 보여준다. 첫째는 관용이다. 관용이란 다수가 소수의 다름을 사회의 평화를 위해 너그러운 마음으로 참아 주는 것인데, 세계화의 바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관용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 첫째는, 점증하는 소수의 숫자가 다수로 하여금 소수의 흡수

동화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고, 둘째는, 소수집단이 단지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해 온 다수집단의 정당성을 부정하면서 더 이상 다수의 관용에 호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은 아예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 유지를 양보할 수 없는 생존의 권리로 주장하고 있다. 다수 중심의 평화가 깨지지 않는 한 참아 준다는 의미에서 관용은 중요한 덕목이지만, 그와 같은 인내는 다수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자의적으로 멈출 수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²⁾

두 번째는 비차별의 법제화이다. 다수에 의한 소수의 차별은 때로는 거친 말이나 전단 등에 쓰여진 표현(expressive)의 형태로, 또는 특정 자격시험이나 가계, 집을 구하는 일 등에서 접근(access)을 방해하는 형태의 차별로, 더욱 심하게는 소수자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물리적(physical)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차별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여 처벌하는 것은 임의적 덕목이었던 관용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서구의 많은 나라에서 인종 혐오에 근거한 범죄는 보통 범죄보다 훨씬 가중 처벌된다. 가끔 표현 형태의 차별은 의사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사적인 공간을 벗어나 공공영역에서 행해진 표현형태의 차별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셋째는 비차별의 법제화라는 소극적 영역에서 또 다시 한발자국 더 나아가 정책적으로 문화적 권리를 지원하는 다문화주의의 단계이다. 다문화주의는 단

순히 단일문화에서 다양한 문화로 변화해 가는 사회의 현상을 가리키는 가치중립적 용어로 쓰일 수도 있고, 소수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규범적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 후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문화주의란 사회적 소수집단의 정체성과 문화적 이해를 공공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려는 일련의 흐름으로 정의할 수 있다. 경제나 복지차원의 정책이 슈보다는 사회적 인정과 문화적 생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접근에서는 사회적 소수의 보호를 위해 예외적인 역차별 제도를 만드는 것, 공공영역에서 문화적 표현을 인정하는 것, 국가차원에서 특별한 대표나 집단적 자치의 권리를 허용하는 것 등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 단계는 다수중심 사회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류사회의 기존 제도와 법의 틀 안에서 큰 양보 없이 실현가능했던 관용 및 비차별의 제도화 단계와 구별된다.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 변화 단계 가운데 아직 관용을 호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물론 관용은 다문화 사회의 어느 단계에서나 필요한 중요한 덕목이다. 그러나, 비차별의 법제화나 다문화주의 단계로의 이행과 비교한다면 이제 시작에 불과한 수준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한번도 가 보지 않았던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새로운 구성원과 기존의 시민들이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사회통합의 원칙에 대한 이론 작업을 필요로 한다. 즉, 점차 다원화되는 사회에서 사회적 다수와 사회적 소수, 또는 기존의 시민들과 새로운 이주자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구성의 원칙을

2) 김남국. 2005. 심의다문화주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적 생존. 『한국정치학회보』, 39(1): 88.

찾는 일은 우리 사회가 광범위한 토론과 성찰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혹자는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층의 증가 등이 우리 사회의 더 시급한 현안이 아니냐고 질문하기도 한다. 물론, 우리사회에는 전통적인 갈등기준에 따른 사회경제적 약자로서 총인구의 6.5퍼센트인 360만여 명의 절대빈곤층이 존재한다. 따라서, 노약자, 어린이 가장,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사회경제적 약자 문제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들의 존재가 지구화 시대의 등장을 반영하는 준거적 현상이고, 우리사회의 가장 주변적인 부분에서 우리사회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시험하는 사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누구든지 수궁할 만한 답을 제시하지 않고서 한국이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동시에, 하나의 정치공동체로서 고단한 역사의 경험속에서 형성된 다수의 민족 감정을 무시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무대에 도달하기도 전에 무너져 버릴 것이다.

모든 다문화 사회는 이와 같은 딜레마에 빠진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문화 현상은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라는 보편의 세례를 받아 가는 과정이므로 오히려 한국적 특수성이 약화되어가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와 비슷한 유럽의 전통적 국민국가들이 채택했던 사회구성의 원칙을 원용하여 우리사회를 분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사점

이 있다. 유럽의 대표적인 국가인 영국과 프랑스는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형성한 사회통합의 서로 다른 원칙을 심의다문화주의와 공화주의라는 이름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유럽의 의미: 영토와 문명

유럽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는 영토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명을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영토를 기준으로 볼 때 유럽의 의미는 조금씩 변화해왔다. 기원전 유럽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와 터키로 둘러싸인 지중해 북동쪽의 에게해 연안지역을 의미했다. 그리스, 로마문명의 확장과 함께 유럽의 경계는 넓어져 갔지만, 그 범위는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보스포리스 해협을 기준으로 대륙의 서쪽을 가르키는 것이었다. 해협의 동쪽은 아시아라고 불렀다. 역사속에서 유럽의 지리적 범위는 두 번에 걸쳐 그 중심을 서쪽으로 이동한다. 한번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서기 330년에 오늘날 이스탄불로 로마제국의 수도를 옮긴 이후 동로마와 서로마가 나누어 지고, 동로마가 비잔틴 제국으로 불리다가, 1453년 오스만투르크 제국에 의해 점령당함으로써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과정에서 그 범위가 축소되는 것이고, 다른 한번은 냉전 이후 소련의 동유럽에 대한 점령정책과 그 영향력으로 인해, 유럽의 중심이 다시 한번 동유럽을 제외한 프랑스, 독일, 영국 중심의 서유럽으로 이동하는 것이다.³⁾

3) J. G. A. Pocock, 1997, "What Do We Mean By Europe?" *The Wilson Quarterly*, 21(1): 12-29.

문명을 기준으로 할 때 유럽의 의미는 세 가지 역사적 유산을 공유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첫째는 그리스, 로마 문명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미쳤던 지역을 의미한다. 로마제국은 오늘날 유럽이라고 불리는 거의 전 지역을 직접 점령했거나 통치했고, 법의 지배와 행정력이라는 유산을 남겼다. 그리스의 경우에는 이성의 존중과 민주주의의 전통 및 건축을 그 유산으로 남겼다. 둘째는 중세의 봉건제를 거치면서 계약의 문화와 분권의 문화를 공유한 지역을 일컫는다. 왕과 영주, 영주와 영주 사이의 계약과 분권의 전통은 유럽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자본제적 생산양식의 등장과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셋째는 기독교의 전통을 공유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⁴⁾ 여러 형태의 교파적 분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전통은 유럽을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특징으로써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존재를 공인한 이후 유럽인들의 생활과 문화에 뿌리내리고 있다.

이 세 가지 전통을 기준으로 보면, 역사속에서 지리적으로 축소되었던 유럽의 범위가 오늘날 유럽통합의 과정에서 정확하게 그 문명의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동쪽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4년 5월 유럽연합의 일원이 된 동유럽 지역의 여러 나라들은 이 세 가지 특징들을 모두 공유한다는 점, 특히 기독교의 전통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적어도 사회, 경제적 조건을 둘러싼 문제를 제외하면

유럽의 일원이 되는 과정에 큰 장애가 있던 것은 아니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나라는 터키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가입여부를 협상중인 터키의 경우는 기독교 전통의 공유라는 기준에서 볼 때 이질적인 이슬람 국가로서, 유럽연합으로서는 전혀 다른 문명권에 대한 포섭이라는 중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 셈이다.

4. 유럽중심주의와 오리엔탈리즘

유럽은 이처럼 지리나 문명의 차원에서 정의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모든 전통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유럽의 성취는 불가침의 자유와 존엄할 권리를 갖는 개인의 발견이라고 할 것이다. 유럽의 근대가 발견해 낸 이 평등한 개인의 개념은 공공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 그리고 세속적인 영역과 종교적인 영역의 분리라는 근대의 또 다른 성취와 함께 진행되었다. 개인의 해방이라는 유럽의 성취는 급속한 경제적 생산력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경제적 발전을 바탕으로 문화 역시 찬란하게 꽃을 피웠다.

나아가서 유럽은 자신들이 쌓아 올린 경제적 발전과 문화적 부흥을 바탕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른바 유럽중심주의는 첫째, 유럽이 이룩한 문명은 인류사의 최고의 발전단계에 이르렀다는 유럽우월주의 둘째, 유럽의 발전과정은 서구와 비서구

4) Elie Barnavi, 2002. "European Identity and Ways of Promoting it," in Henry Cavanna ed., *Governance, Globalization and the European Union*, Dublin: Four Courts Press: 87-94.

의 모든 역사에 적용 가능하다는 유럽보편주의 셋째, 저발전의 비서구는 유럽식의 발전의 길을 따라 근대화될 수 있다는 유럽근대화론 등으로 이루어진다.⁵⁾ 이러한 유럽중심주의는 적자생존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다위니즘의 논리와 연계되면서 우월한 유럽의 문화가 저열한 비서구를 계몽시킨다는 논리아래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다.⁶⁾

상대적으로 단일하고 동질적인 유럽의 인종과 문화가 제국주의적 팽창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동양과 만났을 때, 이른바 동양비하론인 오리엔탈리즘이 탄생한다. 오리엔트(Orient)는 라틴어로 해가 뜨는 쪽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특정지역을 가르키기 보다는 유럽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동쪽이라는 상대적인 의미로 쓰였다. 예컨대, 로마시대부터 중세까지 오리엔트는 현재의 중동지역을 뜻했고, 성서에 나오는 동방박사(three wise men from orient)는 팔레스타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페르시아 지역을 의미했다.

서구 제국주의의 팽창 범위가 아시아 지역에까지 미치기 시작하면서 오리엔트는 아시아 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뜻이 넓어진다. 그러나 여전히 가장 널리 쓰이는 의미에서 오리엔트는 중동지방을 가르키고, 프랑스어에서 오리엔트는 북아프리카와 중동

을, 영어에서 오리엔트는 극동 아시아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쓰인다. 영화의 제목이 되기도 했던 오리엔트 특급은 파리와 이스탄불 사이를 오가는 기차를 일컫는다.

우리가 오리엔트 연구라고 부르는 학문의 범주는 제국주의 팽창기에 서구학자들에 의해 진행된 중동이나 극동 지역의 사회, 언어, 문화에 대한 연구를 의미한다. 이들에 의해 형성된 오리엔트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방법과 결과들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용어로 불려졌다. 서구학자들에 의해 진행된 이러한 연구가 갖는 부정적 함의는 1978년 팔레스타인 출신의 콜롬비아대학 교수였던 에드워드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본격적인 비판에 직면하기 시작하였다.⁷⁾

사이드에 따르면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의 동양에 대한 사고방식이자 지배방식으로써 동양은 서양보다 열등하다는 인종차별주의, 자문화중심주의 등의 제국주의적 편견을 체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사이드의 비판 이후 오리엔탈리즘은 동양 사람들이 동양 자신을 볼 때 서구 사람들이 규정하는 동양에 대한 인식의 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본다는 비주체적인 측면이 부각되었다. 열등하게 타자화된 서구의 규정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본다는 점에서 오리엔탈리즘은 더 부정적인

5) Jung In Kang, 2005. "South Korean Democratization: Revisited in Light of Western Experiences," A Paper presented International Conference 'Democracy, Democratization, and Political Ideologies: A dialogue between Korea and Europe', September: 4.

6) Mike Hawkins, 1997. *Social Darwinism in European and American Thought, 1860-1945: Nature as Model and Nature as Threa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7) Edward Said, 1979. *Orientalism*. London: Vintage.

누구도 유럽의 지위에 대해
 감히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던 시기에 다인종과
 다문화 사회는 제국의 위대함과
 포용력을 보여줄
 이상이자 상징이었다.



의미를 갖게 되고,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 되었고, 오늘 날 이 용어는 Asian Studies 등의 구체적인 지명을 붙이는 것으로 바뀌면서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다.

5. 프랑스의 공화주의와 영국의 심의다문화주의

자신들의 문화와 문명에 대한 우월성을 역사적으로 체계화하고, 그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비서구 세계에 대한 제국주의 지배를 합리화하던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 다문화 사회의 도전이 얼마나 참기 힘든 일이고 충격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다. 누구도 유럽의 지위에 대해 감히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던 시기에 다인종과 다문화 사회는 제국의 위대함과 포용력을 보여줄 이상이자 상징이었다. 그러나, 제국의 쇠퇴와 경쟁의 심화는 이민자들을 곧바로 유럽을 위협하는 부담으로 느끼게 만들었다. 더구나 사회적 소수의 숫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차별, 문화적 차이가 커지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그 갈등의 골이 인종폭동의 형태로 폭발해 왔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영국의 인종폭동 사례는 2001년 5월 중서부 공업지대인 리버풀과 맨체스터 지역 북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 올담에서 시작되고, 곧이어 리즈, 번리, 브래드포드로 번져나간 소요사태를 들 수 있다. 많은 상가들이 화염병에 불타고 차들이 전소되는 가운데 수십여 명의 경찰과 시민들이 부상당하고 최종적으로는 50여 명이 구속되면서 사태는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이 소요는 아시아인들에 의해 시작된 최초의 인종폭동이라는 점에서도 새로운 현상이었다. 물론, 영국의 인종폭동 역사는 훨씬 이전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미 1958년에 런던 교외 노팅힐에서 인종간 충돌이 있었다. 전후 최초의 인종폭동이었던 이 사태에서 소요의 시작과 가해자는 백인 노동자들이었고, 피해자는 주로 카리브해 지역에서 이민 온 흑인 노동자들이었다. 이후 1960년대 후반에 이민이 본격적으로 사회문제화 되면서 보수당 의원 에녹 파월을 중심으로 한 격렬한 반이민 선동이 있었고, 1970년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에는 이미 슬럼화된 도심지역에서 흑인청소년들과 백인 경찰들이 대치하면서 방화와 파괴를 동반한 채로 폭동으로 번지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 시기의 충돌은 흑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먼저 시작한 누적된 분노의 폭발이었다.⁸⁾

프랑스의 경우도 인종폭동의 경험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2005년 10월부터 약 한 달간 프랑스 전역의 300여 개 도시에서 일어난 폭동은 5천여 대의 차량 방화와 1,000여 명의 체포 및 경찰의 발포, 사망자 발생 등으로 이어지면서 68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소요로 기록되었다. 이 소요의 시작은 파리 북서쪽 교외 끌리쉬 지역에서 경찰에 쫓기던 2명의 무슬림 청소년들이 감전사하면서 무슬림 공동체의 분노를 불러 일으킨 것이었다. 이미 프랑스는 1970년대 후반에 리용 등에서 일단의 젊은이들이 흙친 차량을 타고 도심을 질주한 다음, 차를 불태우고 사라지는 형태의 소요를 경험해 왔다. 이러한 형태의 폭력은 흙

친 차를 이용해 상가에 돌진하여 유리창을 부수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 왔다. 1983년에는 인종차별 철폐와 폭력 추방을 기원하면서 10만여 명의 무슬림과 프랑스 시민들이 마르세이유에서 파리까지 이르는 길을 행진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었다. 프랑스의 인종갈등이 항상 전국적인 차원의 논쟁으로 비화되고,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에는 이른바 공화주의 원칙에 근거해 다문화의 도전에 대응하려는 프랑스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한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⁹⁾

프랑스의 공화주의는 혁명 이래 수립된 정교 분리의 세속주의를 가장 큰 원칙으로 하고, 자유, 평등, 박애, 애국주의 등의 가치를 지향해왔다. 공화주의에서 개인은 자신이 속한 정치공동체의 시민으로서 공공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스스로의 자유를 완성시킬 것을 요구 받는다. 국가 역시 정치과정의 중요한 참여자로서 정치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적극 개입해야 하는 것으로 상정된다. 프랑스는 이와 같은 공화주의 원칙에 동의하는 한 모든 사람들은 인종과 국적, 성, 종교에 상관없이 프랑스 시민이 될 수 있다고 천명해왔다. 즉, 공화국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갖는 특별한 종교나 문화의 정체성과는 상관없이, 공화국의 이상에 동의하고 참여하면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프랑스는 헤드스카프 논쟁에서 보여지는

8) Nam-Kook Kim, 2005, "Ethnic Violence and Ethnic Cooperation in New Labour's Britain,"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39(4).

9) Michel Wieviorka, "Riots in France," SSRC Home Page, <http://ritosinfrance.ssrc.org>

것처럼 공공영역에서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철저히 금지해왔다. 즉,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사회가 파편화되는 것보다는 공화주의 원칙을 중심으로 연대하는 단일한 공화국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 소수에게 더 나은 평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프랑스 공화주의자에게 사회적 소수가 제기하는 공공영역에서 문화적 정체성의 인정 요구는 원시적 부족주의와 종교적 신념이 싸우는 중세시대 암흑의 정글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중세의 유혈 종교갈등을 세속주의 원칙으로 해결했다고 믿는 프랑스 공화주의자들에게 다문화주의의 수용은 다시 중세의 전철을 밟으려는 어리석은 시도일 뿐인 것이다.

다문화의 도전에 대응하는 프랑스의 이와 같은 공화주의 원칙은 모든 논쟁에 국가개입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속성으로 인해 많은 사안들이 국가차원의 논쟁으로 비화하고, 이러한 상황은 극우집단과 이민자 집단 모두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세력을 넓힐 수 있는 공개적인 기회와 구조를 제공한다. 그 결과 오늘날 프랑스는 강력한 전국차원의 이민자 조직이 유럽에서 가장 많고, 이에 맞서는 전국차원의 극우정당 활동 역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할 정도로 활발하다.

반면, 영국의 심의다문화주의는 문제가 된 상황을 고려하고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대표되는 가운데 대화와 토론을 통해 타협점을 찾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추구한다. 영국의 인종폭동이나 문화적 갈등이 프랑스와 비교할 때 사람들의 눈에 덜 띄는 이유도 문제를 당사자 중심의 지역 차원에 국한시키면서 국가

차원의 거대 원칙에 따른 일관된 접근 시도를 아예 지양하는 데 있다. 즉, 영국은 프랑스처럼 세속주의, 자유, 평등 같은 선형적인 가치를 따라 국가차원에서 논리적으로 상황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사건에 대해 당사자들간의 타협에 문제의 해결을 맡기고 국가가 가능하면 개입하지 않는 것을 전통으로 한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프랑스처럼 헤드스카프 논쟁 같은 사건이 생겨날 가능성이 아주 낮다. 우선 헤드스카프 착용에 대한 전국 차원의 규칙을 정부가 나서서 정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고, 설사 헤드스카프 착용을 둘러싼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해당 당사자들의 합의로 결정하라고 맡겨놓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드레스 코드에 관해 학교마다 다른 원칙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평등의 관점에서 보면 어수선히 보일 수 있지만, 실정법과 논리보다는 대화와 판단을 중요시하는 영국의 보통법과 의회주의 전통에서 보면 별로 이상할 것이 없다.

오히려, 전통에 대한 존중과 개인의 자유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의 균형과 타협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려는 영국의 입장에서 보면, 세속주의라는 선형적 가치를 중심으로 세계를 논리적으로 구획하려는 프랑스의 시도는 매우 무모한 해결책으로 보일 것이다. 즉, 프랑스처럼,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나, 관습, 종교 등이 제공하는 사회 관리의 원칙들을 무시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치적 가치나 추상적인 논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태도인 것이다. 영국은 사회적 소수의 요구를 고려하기 위해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자신들의 점진적인 접근이, 논리적 정합성이

나 평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소수집단의 고통을 아예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프랑스의 접근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¹⁰⁾

6. 다문화 사회의 정치적 함의

영국과 프랑스가 선택한 심의다문화주의와 공화주의라는 다문화의 도전에 대한 대응 방식은 두 나라가 걸어온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차이속에서 생성된 각국의 고유한 원칙들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현실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두 나라의 원칙이 현실에서 정책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관용과 비차별의 제도와, 다문화주의 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정책의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두 원칙사이의 차이와 우리 현실에의 적용 여부가 훨씬 명확해진다.

우선 프랑스의 공화주의는 다문화정책의 첫째 단계에 해당되는 관용에 대해 강조한다. 공화주의에서 이른바 톨레랑스는 중요한 시민의 덕목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프랑스적 맥락에서 관용은 세속주의와 애국주의에 근거한 공화국의 이상에 동의하는 한에서만 사회적 소수의 다름을 참아준다는 한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무슬림들은 현세에서 종교적 선의 구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신들의 생활방식을 공화주의가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공화주의는 세속근본주의에 근거해 무

슬림들의 주류사회로의 사회적 통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배제의 장벽이라는 비판을 제기한다. 두 번째 단계인 비차별의 제도화에서도 프랑스는 독특한 입장을 보여준다. 프랑스는 인종차별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별도의 입법을 통해 처벌하기 보다는 기존 형법의 틀 안에서 처벌하려고 한다. 세 번째 단계인 다문화주의 단계는 공공영역에서 사회적 소수의 예외적 지위를 인정하고 예산지원을 통해 집단자치, 집단대표, 다문화의 권리 등을 보장하는 것인데, 프랑스에서 이러한 정책사례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반면, 영국의 심의다문화주의는 첫 번째 관용의 단계에서 대화와 타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소수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한다. 영국은 관용의 범위에 대해 루시디 사건에서 보듯이 의사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공공질서 유지라는 원칙이외에는 특별한 전제를 달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영국의 심의다문화주의는 적어도 다수와 소수가 합의만 한다면 무슨 내용이든 담을 수 있는 유연한 그릇임에 틀림없다. 두 번째 비차별의 제도화에 대해 영국은 이미 1976년에 유럽에서 가장 먼저 기존 형법과 별도로 인종관계법(Race Relations Act)을 만들었고, 인종평등위원회(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라는 특별기구를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세 번째 단계인 다문화주의에 대해서도 영국은 사회적 소수들에게 다양한 자치와 대표, 다문화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다

10) 김남국. 2004. 영국과 프랑스에서 정치와 종교. 『국제정치논총』, 44(4).

문화정책의 원칙을 천명하지 않던 영국에서 의외로 구체적인 정책들은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다문화의 도전에 대응하는 두 나라의 원칙들을 살펴볼 때 가졌던 공화주의와 심의다문화주의에 대한 인상은 다시 한번 바뀔 수 있다. 즉, 공화주의의 분명한 원칙은 논리적으로 명쾌한 결론을 보여주지만, 문화적 생존을 요구하는 사회적 소수는 자신들의 필요가 무시되는 현실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공화주의가 성공적인 다문화의 대응방식이 되기 위해서는 공화주의적 원칙과 제도들이 확고한 정책으로 집행되고 있어야 한다. 만약, 공화주의적 제도와 정신이 쇠퇴하고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대우가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문화적 생존의 요구까지 무시된다면 사회적 소수에게 이런 사회는 아무런 장점이 없는 최악의 경우가 된다.

마찬가지로, 심의다문화주의는 엄격한 정교분리를 강요하지 않고, 공공영역에서 종교의 역할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유연성을 생명으로 하지만, 평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보면 영국의 방식은 항상 자의적인 판단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비판 받을 수 있다. 예컨대, 1990년대 중반까지 영국에서 성공회와 가톨릭, 감리교, 유대교의 학교는 공공예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슬람과 유대정교, 모르몬 등의 학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신정국가에 서처럼 전적인 지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공화주의에서처럼 전적인 지원금지라는 원칙도 없는 상태에서 해당 종교의 요구와 그 종교에 대한 사회적 인정, 지위, 신도 수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판단하다 보면, 특정 종파에게 공정하지 못한 상황을 초래할 개연성

은 항상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영국과 프랑스의 다문화정책이 다른 나라의 현실에 원용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면밀한 비교와 검토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다문화 사회의 등장이 우리사회에 갖는 근본적인 함의는 단순한 다문화정책의 수립 여부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변화하는 사회구조는 그에 상응하는 정치체도의 개혁을 요구한다. 다시 말하자면, 아래로부터 분화하는 사회는 그에 상응하는 정치체도의 변화를 당연하게 요구하고, 유럽의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우리는 그것을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y)에서 합의제 민주주의(consensual democracy)로 이행의 필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수제 민주주의는 비교적 동질적인 사회와 문화, 역사적 경험을 전제로 한다.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사회에서 사람들은 비폭력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결의 원칙에 쉽게 합의한다. 다수결의 원칙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에는 다시 두 가지 점이 전제되어 있다. 하나는 내가 지금은 이 사회의 소수이지만 다른 경우에는 다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이다. 다른 하나는 내가 비록 소수의견이기 때문에 양보할지라도 다수가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이라는 소수의 권리보호에 대한 믿음이다.

다시 말하자면, 한 정치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다수결의 원칙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은 이와 같은 두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다수가 요구하는 희생에 소수가 기꺼이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 즉 사회적 연대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다수가 소수에 대해, 또는 소

수가 다수에 대해 갖는 신뢰를 전제하지 않고는 다수결의가 성립될 수 없다. 물론 그것이 이미 성립된 제도이기 때문에 모두가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다수의견에 기꺼이 승복할 만한 아무런 신뢰 없이 기계적인 포기를 강요당하는 사회를 우리가 바람직한 정치공동체라고 부를 수는 없다. 특히, 인종, 문화, 종교적으로 분화된 사회에서 어떤 집단이 구조적으로 다수가 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실시하는 다수결의는 소수집단에게 끊임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폭력이 될 뿐이다.

따라서, 만약 한 정치공동체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화되어 간다면, 그리고 그 결과 전혀 대표될 가능성이 없는 소수집단이 늘어간다면, 동질적인 사회를 전제로 51퍼센트의 단순 다수(simple majority)를 묻는 다수결의 원칙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as many people as possible) 합의제의 원칙으로 바뀌어야 한다. 합의제의 대표적인 형태인 협의제 민주주의(consociational democracy)는 네 가지 원칙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사회내의 다양한 하부집단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렇게 인정된 집단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대연정을 통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셋째, 대연정을 구성하는 원칙으로써 참여집단의 크기에 따른 비례성의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집단은 상호거부권을 갖는 것이다. 상호거부권으로 인해 모든 정책결정과정이 멈추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지만, 유

럽의 경험은 대체로 각 집단이 학습효과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국을 운영해 나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¹¹⁾

물론 우리사회가 당장 협의제 민주주의를 실시해야 할 정도로 균열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방향으로의 장기적인 발전 경향은 분명해 보인다. 이미 우리사회는 사회경제적 기준에 따른 양극화의 심화로 대표되지 않는 집단이 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이 빠른 시일내에 역전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인종, 문화, 종교적 소수집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그에 걸맞는 다문화정책을 요구하고, 이렇게 분화하는 사회에서 정치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의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합의제 민주주의로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수제 민주주의가 1차 방정식이라면, 합의제 민주주의는 고차원의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분화하는 사회 구조를 반영해 생겨나는 복잡한 문제는 더 정밀한 고차원의 제도를 통해 복잡하게 풀어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에서 정치는 모든 사회집단을 만족시킬 어떤 거대담론도 존재할 수 없고, 말 그대로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익을 주고 받는 지루한 일상이 될 확률이 높다. 우리는 이제 단 한 번의 선거, 단 한 명의 위대한 정치인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이 사라져 버린 다문화적 정치상황에도 점차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

11) Arend Lijphart, 1999, *Patterns of Democracy*, N.Y.: Yale University Press.

미국의 다문화 정책과 교훈

김형인 | 한국외대 연구교수, 미국학 전공

세계화의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현 시대에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의 여러 가지 대내외정책은 그런 의미에서 다른 여러 나라로부터 지지를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한다. 이런 미국의 정책들 중에서 세계 곳곳에 긍정적 메시지를 주고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으뜸가는 정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 미국의 다문화 정책이다.

미국은 원래, 원주민을 뺀다면, 다양한 이민 집단으로 시작된 나라였다. 여러 인종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민 집단이 모여 살며 국가를 이루게 됨으로써, 미국사회는 초기에서부터 다문화적 요소를 배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질적 이민 집단 사이의 갈등도 다른 나라보다 일찍 겪게 되고, 그것을 풀어가는 노력도 다른 나라보다 일찍 시도함으로써 미국은 다문화주의의 실험실이 되어 왔다. 미국 역사의 초창기에는 리더십이 영국계 백인 개신교도들에게 독점되었었다. 그러나 끊임없이 유럽지역에서 다양한 국가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이 대대적으로 유입됨으로써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유럽인들 사이에 사회참여에서 동질성이 이루어졌다. 그 후 미국사회는 민권운동을 계기로 흑인의 권리 향상에 이어 히스패닉

계, 아시아계, 나아가 여성의 지위 향상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1950년대에는 미국사회는 용광로(Melting Pot)라는 개념이 우세했다. 이는 미국에 이민 오면 다양한 이민 집단이 미국사회라는 용광로에 녹아들어서 새로운 미국인으로 거듭난다는 것이며, 이 개념의 근저에는 용광로의 근본적 색채가 영국 내지는 서유럽적 문화라는 유럽제일주의의 이념이 암암리에 존재했다. 그러나 지금은 용광로라기보다는 내용물이 제각각 그 맛을 그대로 보존하는 샐러드 쟁반으로서 겨우 드레싱이 한 가지 맛으로 연결시켜줄 만큼 미국사회는 다문화적이 되었다는 인식이 보편화됐다. 이런 다문화적 사회에서 여러 집단은 제 가끔의 생활방식을 향유하면서 그들 나름의 행복추구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출신국 나름대로 각기 다른 라이프스타일만을 추구하는가. 결코 그렇지만은 아니다. 다문화적 공존이라는 현상의 기저에는 이 이민자들을 하나의 공감대로 묶어주는 국가의 기본 이상이 있다. 이는 다른 말로, 건국이념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며 '다양함으로부터 하나로' (E Pluribus Unum) 라는 건국초기부터 지속되는 대명제로 정리될 수 있다.

다양한 생활 속에 녹아있는 공통된 이상

미국인은 자기 나라의 건국 목표와 과정은 다른 나라와 아주 다르며 그래서 자기 나라는 인류역사상 예외적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 자긍심의 근원은 자기들은 소위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국가를 수립했다는 것이다. 비록 자유와 평등의 완전 실현은 이 세상에서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이상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는 제도를 세울 것이라는 신념을 미국인들은 공유하고 있고 그 꿈의 상당한 부분을 성취했다고 믿는다.

예외성에 대한 자긍심 때문에 미국인들은 외국인들로부터 많은 원망과 질시를 받아왔다. 우선 미국인은 민주주의가 자신들의 전유물인 듯 생각하고 자기 식의 방식을 외국에게 강요하려 든다는 느낌을 준다. 현재 이라크의 경우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국내외적 논란도 미국식 민주주의의 수립을 이라크에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데서 오는 부분이 있다. 세계화 문제에 있어서도, 공산권 몰락 후 냉전구도가 사라진 공백에서 세계질서는 저절로 무역자유화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무역자유화를 너무 조급하게 밀어 붙여서 군소 국가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미국인들이 신의 말씀에 따라 언덕 위의 도시(City Upon a Hill)를 세워 세계의 모범이 되겠다는 종교적 신념은 세속화와 더불어 정치적 신념으로 계승됐다. 이 신념이 세계적 구도에서 역풍을 맞을 경우 미국의 패권주의적 면모를 부각시키지만, 순풍을 맞을 경우 그것은 미국을 뒤따라 민주화·산업화의 길을 걷는 많은 나라에게 좋은 모범을 제시한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잣대에 비추어 볼 때, 다문화주의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가 본받아도 좋을만한 긍정적 메시지를 포함한다. 우선 미국 다문화 정책의 역사적 맥락을 짚어보자.

다문화 정책의 역사적 전개

다문화주의는 이 지구 위의 여러 문화, 문명, 사회, 그리고 그 문화와 사회를 이루는 민족, 인종, 집단, 국가들이 평등의 원리 위에 서로의 문화를 상호 존중하며 평화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믿음이다. 현재 다문화주의는 누구나 동의하는 보편적인 가치일 것이다. 그러나 문화권 사이의 평등 관계가 확실히 수립되어 가기 시작한 것은 겨우 반세기가 지났을 뿐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대체로 지구상에 있는 사회, 국가, 인종, 문화를 직선적으로, 우열이 뚜렷한 고급과 저급의 스펙트럼 선상에서 파악해왔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이르러 인종주의는 과학이라는 탈을 쓰고 더욱 극성을 부리다 드디어 인종청소의 만행을 저지르는 히틀러와 나치당을 탄생시켰다. 그들의 반인륜적 행위에 몸서리를 친 후에야 사람들은 문화나 인종에 우열의 점수를 매기던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몽매한 아집에 사로잡혔었던가를 반성하게 되면서 비로소 문화권을 평등한 관계에서 수평적으로 보려는 시각에 눈뜨게 됐다.

다문화주의가 미국에서 확고히 수립되는 기점은 1960년대의 흑인민권운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의 새싹은 과학적 인종주의가 기승을 부

리던 20세기 초에 움텄다. 19세기 중반에 나타난 다윈의 진화론은 기존에 존재했던 인종적 편견을 강화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생물학의 발달에 힘입어 파생된 유전학과 인류학은 인종들 사이의 우열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 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IQ 테스트도 20세기 초에 미국남부 흑인의 열등성을 사회 환경적 요인이 아니라 생래적인 생물학적 차이로 증명하려는 '사이비' 과학에서 파생됐다. 점점 인종차별은 과학적 학문분석의 틀을 이용하며 위용을 떨쳤다.

이에 반발해서 학계 일각에서는 환경론이 대두했다. 이는 환경적 요인이 인간능력의 우열을 조성하는 주요 요소이며, 그것은 환경의 개선과 학습적 훈련에 의해 교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환경론은 미국에서는 존 듀이를 따르는 실용주의적 학풍을 중심으로, 국외에서는 프랑스 과학자 라마르크의 획득형질론에 대한 재평가와 소련이 민족해방전선을 부르짖으며 다문화주의를 선전함으로써 떠오르기 시작했다. 20세기 초에 환경론적 시각을 갖고 있던 이들은 미국에서 진보진영에 대거 포진해있었으며 이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개혁으로 집대성된다.

뉴딜개혁과 다문화주의

뉴딜정책 수립 반세기 이전부터 미국에서는 혁신주의라는 개혁의 물결이 확산되고 있었다. 이 시기는 동·남부 유럽에서 대대적으로 모여드는 가톨릭교도와 유대인 이민을 미국시민으로 통합하기 위한 최초의 사회적 운동이 있었다. 이는 주로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이끌어간 여성 사회운동가들의 주도로 사

적인 분야에서 일어났다. 시카고에서 제인 애덤스(Jane Adams)가 설립한 헐하우스(Hull House)는 이민자들에게 영어와 요리, 바느질 등을 무료로 가르치고 미국적 생활방식과 가치를 주입시키면서 그들을 미국시민으로 거듭나게 하는 큰 역할을 담당했다. 그 후 많은 도시에 사회복지관이 앞 다투어 건립되면서 이민의 생활여건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공론화하여 입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나 나타난 뉴딜개혁은 지식인과 노동자와 흑인의 연합세력이 이루어놓은 성과로서, 이민자와 소수민족에 대한 복지를 국가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원래 미국은 철저히 자유경제를 믿고 정부의 경제부문 간섭을 최악으로 보는 보수적 성향이 강한 사회였다. 이런 보수적 사회에서 개혁연대가 조성될 수 있었던 기반은 미국경제가 경제대공황으로 파탄을 맞는 역사적 참변을 겪고, 미국 국민들 사이에 자본주의에 대한 일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마련된 데에 있었다.

뉴딜시대에 다문화주의는 정책적으로 꽃피기 시작하여, 프랜시스 퍼킨스(Frances Perkins)가 최초의 여성장관으로 임명됐고 히스패닉계 연방의원도 처음으로 출현했다. 특히 흑인의 인권향상에 힘을 기울였던 사람은 엘리노어 루즈벨트 영부인이었다. 우리가 20세기 초반기 미국 흑인의 상황을 이해하려할 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남부와 북부에서 흑인들의 지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북부에서는 고등교육도 받고 전문인으로서 입지한 이들이 꽤 있었다. 이런 이들을 중심으로 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he Colored People)가 20세기 초에 결성됐는데, 이 조직은 다른 무엇보다도 흑인의 권리향상을 위해 제도권 내에서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하고 입법을 추진을 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었다.

영부인은 이런 NAACP 지도자들과 두터운 교분을 쌓고 이들을 지원하여 주었다. 또 유럽에서 각광을 받던 마리안 앤더슨이 귀국해서 카네기 홀에서 독창회를 열려하자 한 인종적 단체가 이를 저지했는데, 영부인은 그 대신 링컨기념관에서의 공연을 주선했다. 뉴딜시대에 시작된 사회복지정책에서도 흑인이 수혜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연유로 흑인들은 수십 년 동안 굳건히 지지해오던 링컨대통령의 공화당을 저버리고 민주당으로 전향했다.

2차대전 후

뉴딜이 채 종결되기 전에 미국은 전시비상체제로 들어간다. 전쟁의 와중에 사회복지지는 물론 다문화 정책의 추진이 잠시 주춤했으나 종전과 더불어 전후의 호황 속에서 다문화 정책은 확장된다. 2차대전 후 초대강국이 된 미국은 막대한 부를 두 가지 면에서 아주 잘 사용했다. 첫째는 자유세계의 전후 복구사업에 대한 무상원조였다. 경제는 상호의존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이 정책은 전후 세계경제가 큰 불황을 맞지 않고 순탄히 전개되는 데 기여했다. 둘째는 국내의 GI Bill로써 참전용사들에게 무상교육과 주택구입 우선권의 혜택을 준 것이다. 이에 따라 제대군인들 중 많은 흑인이 대학교육을 받고 직장을 얻게 되면서 이

들은 1960년대 민권운동의 기수가 됐다.

전후에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새로운 나라들이 부지기수로 수립되었고 신생독립국의 외교관이나 지도자들은 미국을 방문했다. 그들의 공식방문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그 후 뒤풀이 여행길에 오르면, 미국 남부 지역에서 그들은 백인 식당이나 호텔에서 퇴출당하기 일수였다. 심지어 누가 미국 현지의 흑인인지 외국의 고위관리인지 구분을 잘 할 수 없었던 미국경찰에게서도 모욕당하는 일이 더러 있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 대표들은 끊임없이 미국 정부에게 사과를 요구해왔다.

세계대국으로 발돋움 한 미국의 체면은 말이 아니었다. 게다가 소련은 전략적으로 미국의 인종주의를 공격했다. 그 때부터 인종차별의 문제는 다만 남부의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미국연방정부의 지도자들은 깨달았다. 인종문제는 노예해방 이래 1세기 동안 남부인들이 자치적으로 해결하도록 국가적 차원으로는 방치해 왔었던 사안이었다. 이에 미국 대통령은 아이젠하워에서 시작하여 케네디, 존슨을 거치면서, 연방권은 주권(州權)에 우선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완강히 저항하는 남부 백인정권에게 연방헌법과 연방방위군을 동원해 가면서 흑인의 시민적 권리를 회복시켰다. 결국 세계화가 미국이 인종주의를 극복하고 다문화주의로 나아가는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런 시대적 조류를 읽은 것은 우선 대법원과 흑인들 자신이었다. 1953년 대법원은 브라운 판결(Brown v. Board of Education)을 내리면서 초등학교의 인종통합에 획기적 계기를 마련했다. 이로써 중

전에 ‘분리하되 평등’(Separate but Equal)하기만 하면 인종평등에는 문제가 없다고 억지 주장을 하며, 흑백분리와 차별을 합법화해왔던 판례를 뒤집는 결과를 가져왔다.

브라운판결에서 여명을 감지한 흑인들은 슬렁이기가 시작했다. 드디어 흑인여성 로자 파크스(Rosa Parks) 여사가 몽고메리 시내버스에서 백인 전용석 바로 뒷줄에 앉아 있다가 백인에게 좌석을 양보하라는 운전사의 명령을 정중히 거부한 사건으로부터 도화선이 마련됐다. 킹 목사는 몽고메리 시내버스 승차거부운동을 주도하였고 1년쯤 지나서 대법원으로부터 그 시의 버스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그는 종전의 NAACP가 주로 이끌던 흑인 인권운동이 간접적으로 법적 투쟁을 하던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평화적 방법으로 시민의 궤기대회와 행진을 주축으로 하는 직접행동으로 나갔던 것이다. 킹목사는 그의 ‘비폭력 직접행동’을 전 남부에 확산했다. 남부 여기저기서 시내버스 승차거부운동, 캐프테리어 좌석점거운동, 고속버스 자유승차운동, 흑인 투표권등록운동, 민주당 지구당 흑인당원 확보운동 등 다방면으로 인권운동이 확산됐다.

드디어 1964년 의회는 민권법을 통과시켜 공공기관에서 입학, 고용, 승진의 경우에, 또 공공기물과 장소의 이용에서 어떠한 미국의 국민도 피부 색깔 때문에 차별 받지 않는다는 철칙을 세웠다. 이듬해에 존슨 대통령은 행정령 11246호로 ‘적극적 차별철폐정책’(Affirmative Action, ‘소수민족 우대정책’ 또는 ‘소수자 차별철폐정책’, ‘적극적 인종통합정책’으로도 번역됨)을 세워 공공기관과 연방정부계약업자들

이 고용에 있어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연방의 재정적 지원을 말소한다고 공포했다. ‘적극적 차별철폐정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2차대전 당시 흑인들이 전투부대로서 참전하면서 군수산업에서 흑백의 평등고용이 이루어졌고, 한국전쟁 직후에는 군대에서의 흑백통합이 이루어졌다. 트루먼에서 케네디에 이르는 전임 대통령들은 고용평등을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를 수립하면서 소수자 인권향상에 관심을 기울여 왔었다. ‘적극적 차별철폐정책’은 이렇게 조금씩 시작한 인종통합을 교육, 공공기관, 산업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확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적극적 차별철폐정책’은 미국에서 인종차별뿐 아니라 모든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하는 버팀목 노릇을 40년간 툭툭히 해내고 있다. 흑인의 저항이 법적 인종차별철폐의 성공을 이루어내자, 미국 내 다른 소수 민족 모두가 그들의 위치를 재점검하고 권리를 주장하게 됐다. 멕시코계, 아시아계 소수 민족뿐 아니라 여성 및 어떠한 이해를 공유하는 소수 집단도 이 정책에 힘입어 그들의 권익을 확장해왔다.

‘적극적 차별철폐정책’에 대한 논란

1970년대 이후 공공기관의 고용, 승진, 입학에 있어서 여성과 소수민족에 대한 특전이 활발히 진행되자, 이에 대한 반발이 1978년 바키 케이스(Bakke v. Regency of University of California)로 나타났다. 앨런 바키는 100명의 입학생 중 15명을 소수민

족에게 할당했던 의과대학의 입학정책 때문에 자신이 좋은 성적을 받고도 낙방했으므로 이 정책은 백인남성에게 오히려 역차별을 가져왔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할당제는 위헌적 소지가 있으나 인종을 입학정책에서 고려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라는 애매한 판결문으로 '적극적 차별철폐정책'을 지지했다.

그 이후 '적극적 차별철폐정책'은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오다가, 1996년 캘리포니아의 주민발의 209호로 시련을 겪는다. 주민들이 투표로 '적극적 차별철폐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할당제를 무효화한 것이다. 다음해에 캘리포니아는 "인종, 민족, 성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고용, 공립교육, 공공계약에서 어떤 개인이나 그룹에게도 차별 내지 우대조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그 주에는 흑인, 멕시코계, 동양계 등을 합친 소수민족의 도합이 백인의 숫자보다 크다는 현실과 동양계의 대학 진출이 현저히 향상됐다는 그동안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현재 캘리포니아의 대학교 입학제도는 연방정부의 '적극적 차별철폐정책'을 있는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소수민족에 대한 배려를 완전히 무시하기 보다는 학교 나름대로의 사정에 맞게 소수민족을 고려하는 정책을 세우고 있다.

이런 사례를 여러 주들이 하나 둘 따라나서기 시작했다. 현재 미국의 대법원도 점차 보수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정책의 향방은 이전보다는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현재까지 우호적이던 방향을 180도 틀어서 완전폐기 할 것 같지는 않다. '적극적 차별철폐정책'은 소수집단과 기

정체제의 대체적인 지지를 받아서 제정되었으므로 보수회기가 가시화된 레이건과 아버지 부시 행정부 하에서도 이 정책의 기본 골격은 무시되지 않았다. 단지 이 정책을 담은 행정령들에 나타나는 애매모호한 문구와 관련부처의 복잡한 세부규정, 또 이에 따른 법원의 복잡미묘한 판례로, 정책의 폭과 내용이 다소 축소·수정되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이 정책에 앞으로 부분적 수정이 가해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되, 이 정책의 큰 줄기 유산은 지속될 전망으로 보인다.

어떤 문제점이 '적극적 차별철폐정책'에서 계속 제기되는가? 이 정책에 대한 반대는 역차별의 관점 외에도 산재해있다. 우선, 이 정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흑인대중은 가난과 열등한 교육과 생활환경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대진영은 이 정책이 몇몇 소수민족에게 성공적 기회를 주어 소수민족의 향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이며, 실제로 있어서는 재원이 투자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제도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극빈자들보다는 도움이 별로 필요 없는 소수민족의 엘리트 계층에게 혜택을 준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반대진영은 소수민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할당제로 몇몇 우수한 개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일이 아니라, 흑인지역에 단체적인 지원, 예를 든다면 구민회관에 대한 지원, 청소년 선도와 교육에 대한 지원 등에 자원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논리를 펴는다. 이들 주장의 근거에는 흑인에 대한 지원은 인종적 고려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빈곤층에 대한 포괄적 지원 내에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깔려있다. 즉, 반대진영은 소수민족의 지원정책

이 민족적·인종적 지원보다는 저소득 사회계층 지원의 일환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는 진영은 보수적인 백인들은 물론 몇몇 흑인들도 포함한다. 캘리포니아 주민발의 209호 운동의 지도자였던 워드 커널리(Ward Curnerly)나 작가 셸비 스틸(Shallby Steel)과 같은 흑인들은 '적극적 차별철폐정책'은 그 혜택을 본 흑인 지도급 인사들에게도 그들이 할당제로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임승차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흑인 자신들의 열등성을 지속시키는 주범이 된다고 비판한다. 그들은 또 소수민족에 대한 지원은 그것 자체가 민족이나 인종을 구별함으로써 오히려 인종주의적이라고 반박한다. 게다가 이 정책은 무능한 소수민족 출신 피고용인에 대해 사용자의 해고를 어렵게 하여, 그들 중 우수한 자들만을 고용하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능력이 다소 부치는 소수계 출신의 취업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들도 결국 인종과 민족에 대한 쿼터를 불식하고 사회저변층에 대한 계층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지원이 흑인내지 소수계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반대진영의 논리는 근본적으로 '적극적 차별철폐정책'을 법적으로 무효화하고, 예전과 같이 인종적 고려가 없던 사회복지제도로 시계방향을 돌리자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다.

한편 '적극적 차별철폐정책'이 세부적 규정과 시행 상에서 애매모호성이 있음으로 이 부분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 정책이 확실하게 뒷받침해주려 했던 1964년의 민권법은 미국 입법사에 중요한 획을 그었지만, 그것은 아주 어렵게

의회를 통과했었다. 인구비례였던 하원에서 흑인의 권리신장에 관한 법들은 수십 년 동안 무난히 통과되었었다. 그러나 모든 주에서 똑같이 2명을 파견하는 상원에서 남부의 결집세력은 위력을 발휘했었다. 예컨대, 20세기 초부터 NAACP의 최고의 관심사는 린치금지법을 수립하는 데에 모아져 있었지만, 뉴딜시대를 포함해서 수십 년간의 엄청난 노력으로도 결국 입법처리되지 못한 터였다. 케네디 시대에도 그가 심혈을 기울인 것은 민권법의 수립이었으나 상원의 저지로 번번이 실패했었다.

이것이 극적으로 상원을 통과한 것은 의회 친화력이 많았던 존슨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이었는데, 그는 원내총무를 비롯해서 다년간 상원의원으로 활동했었다. 케네디의 서거로 존슨이 대통령에 오르자 그는 의회에서 "이제 고인의 명복을 비는 길은 그가 생전에 그리도 수립을 염원했던 민권법을 통과시키는 일뿐"이라고 강조하며 연설을 했다. 비통한 분위기 속에서 이 법은 드디어 극적으로 상원을 통과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존슨은 부랴부랴 이 법을 확실히 할 행정조치를 마련하려했다. 그것의 단초를 마련한 것은 케네디 시절에 이미 선포된 행정령 10925호였다. 그것은 평등고용기회위원회(Presidential Committee on Equal Employment Opportunity)를 수립하고 인종적 편견 없이 고용이 이루어지도록 '확실한 조치'(affirmative action)를 취하기 위해 연방자금을 지원한다는 기획을 담았었다.

존슨은 행정령 11246호로써 상기한 기획을 정책으로 시행하려했다. 이 새 행정령은 연방정부계약업자들이 고용에 있어서 소수자에 대해서 'affirmative

‘적극적 차별철폐정책’의 수호자들은 보다 폭넓은 인도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에 접근한다. 그들은 400년간 흑인에 대한 핍박이 가져온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수자에 대한 이런 우대 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ction’ (적극적 차별철폐정책)을 취하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affirmative action’의 개념은 원론적으로는 고용에서의 인종차별을 지양한다는 외에는 그 규정범위와 시행방식에 대해서 케네디와 존슨 둘 다 정확한 정의를 제공하지 않았다. 아마 소수자 고용평등이라는 큰 틀만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행정부 산하 관련 부처에서 적절한 규칙을 세워가며 시행하는 실용적 접근을 지향하지 않았나 싶다. 이런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적극적 차별철폐정책’을 비판하는 자들은 이 정책은 정리가 잘 안되어 있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를 통째로 폐지하고 차별철폐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깔끔히 정리하여 내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상과 같은 복합적 이유로 1994년의 대선에서 밥 돌(Bob Dole)을 위시한 몇몇 공화당의 대통령 경선후보들은 ‘적극적 차별철폐정책’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적도 있고, 대선에서 승리한 클린턴은 이 정책에 대해 지엽적이지만 부분적으로 수정사항을 내어놓기도 했다.

‘적극적 차별철폐정책’의 수호자들은 보다 폭넓은 인도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에 접근한다. 그들은 400년간 흑인에 대한 핍박이 가져온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수자에 대한 이런 우대 정

책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오랫동안 자행되었던 흑인에 대한 차별이 지난 40년간에 이미 다 보상됐다고 믿지 않는다. 존슨대통령은 이 정책을 수립하기 직전에 하워드 대학교에서 연설을 했다. “두 사람이 경주할 때 한 사람이 100미터 앞서서 시작한다면 뒤에서 출발한 사람은 영원히 뒤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뒤에서 출발하는 자가 동등한 입지를 구축하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적극적 차별철폐정책’의 수호자들은 이 언급을 즐겨 인용하면서, 이 정책이 비록 개인적으로는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미국사회 전체의 안전과 번영을 도모하는 거시적 시각에서 보자면, 소수계에게도 행복추구의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는 것을 복돋아 줌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찬성론자들은 소수자의 고용이 미국인 주류의 고용에 대해서도 전혀 위협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컨대, 2000년도 미국 인구조사에 의하면 백인 실직자는 1,100만 명이고 흑인실직자는 130만 명임으로, 설령 모든 흑인 실직자가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백인 일자리의 작은 몫만을 빼앗을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또 기술적 면에서도 지지

자들은 '적극적 차별철폐정책'은 존슨 이후에 그 세부 사항들이 몇 번이고 거듭 수정 보강됨으로써, 그 시행범위와 방법이 잘 정리되어 왔고 흑인뿐 아니라 다른 소수집단에게도 그 수혜의 범위를 넓혀감으로써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는 유익한 정책이 되었다고 믿는다.

이에 따라, 이 정책의 수호자들은 이 정책이 반대 진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의 긍정적 효과는 부정적 요소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시각을 갖는다. 기실 이 진영은 '적극적 차별철폐정책'의 효과는 미국의 문화 지도를 다문화주의로 확실히 바꾸어놓은 1등 공신으로써 이 정책은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다문화 정책이 주는 세계적 교훈

지난 해 가을 프랑스에서 일어난 아프리카계 무슬림의 소요에 이어서, 인종갈등의 문제는 유럽 국가들의 공동 현안으로 떠올랐다. 무슬림 인구가 대개 유럽 각국 총인구의 5-20% 내외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인종소요의 배경에는 그동안 축적되어온 무슬림 소수계에 대한 보이지 않는 불평등의 높이 있었다. 무슬림 빈민지역은 마치 미국 흑인의 빈민가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실업률이 높고 마약과 총성이 울려 퍼지는 우범지대로 낙인찍힌 그 곳에서 어린이들은 빠져나올 희망이 거의 없으며, 파괴된 가정에서 가난이 대물림된다.

지난 여름 카트리나의 재해로 수많은 흑인이 뉴올

리언스에서 인명과 삶의 터전을 잃었을 때, 국제 사회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인종폭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견했었다. 예견은 빗나갔다. 미국의 인종폭동은 지금은 약 10년 전 한흑갈등으로 빚어낸 LA폭동을 마지막으로 아직은 잠잠하다. 그것은 다른 도시들로 퍼져나가지 않은 격리된 사건이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백인거주지역 보호를 위해 미국의 경찰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적 시각이 강하지만, 보다 큰 안목으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흑갈등에서 엄정 중립을 지킨 정부의 대응방식이 다른 도시로 흑인폭동이 확산하는 것을 막았다고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수 백 년 동안 흑인과 다른 민족 간의 갈등이 표면화됐을 때, 경찰과 법원이 언제나 흑인의 반대편을 두둔했다고 흑인들이 불만을 축적해 왔기 때문이다. 물론 흑인의 반대편은 백인이었다. 그러나 절도하는 흑인소녀를 저격 사살한 한국 여인에 대한 재판문제로 한흑갈등이 일어나자 흑인들은 다시금 관권이 그들의 반대편을 편들고 있다고 느꼈고 이에 정부는 조심스럽게 대응했기 때문이었다.

미국에서도 한 때 견잡을 수 없던 인종폭동의 시기가 있었다. 그것은 1960년대에 민권운동의 성과가 가시화되던 시기에 일어났다. 로스앤젤레스 부근 와트에서 비롯된 폭동은 디트로이트, 뉴욕, 워싱턴 같은 대도시로 번지고 100여 개의 도시에서 크고 작은 폭동이 3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사망자가 백여 명이 넘었고 재산피해가 엄청났다. 미국에서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은 주로 북부와 서부 도심의 흑인들이었다. 그들은 민권운동을 둘러싸고 연일 계속되는 흑인의 인권신장에 대한 보도에도 불구하고 그

들의 삶의 조건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 그도 그럴 것이 민권법의 제정은 미국 남부의 특수여건인 흑백차별에 대한 제도적 법적 불평등을 타개한 것이었다. 북부와 서부에서 그런 법적 차별은 이미 남북전쟁 직후 소멸된 터였다. 그곳의 흑인들에게 가해지는 불평등은 사회적 경제적 차원의 것이었다.

미국의 대책마련

폭동의 불길이 퍼져나가자 이 문제의 조사에 나선던 커너 위원회(Kerner Commission)는 1968년의 보고서에서 앞으로 미국이 걸어가야 할 이정표를 정확하게 짚어내었다. 미국 사회는 흑백의 두 사회로 분열되려 하며, 미국의 계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적극적 차별철폐정책'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사회 여러 부문에서 흑인의 진출에 할당제를 추진하며 통합정책을 확실히 다져나갔다. 한편 존슨 대통령은 '위대한 사회'라는 기치아래 뉴딜이후 계속되던 사회복지 정책을 대폭 증폭하여 홀 부모 가정, 노인, 신체장애자에 대한 생계보조금과 실업수당을 확장함으로써 많은 흑인들이 수혜자가 됐다.

그 결과 오늘날 국무장관에 두 차례 연이어 흑인이 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마련됐다. 이 '적극적 차별철폐정책'은 이후 다른 소수민족과 여성에게도 확장 시행되어 미국을 오늘날 명실상부한 다문화 국가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요즘은 부시집권 이후 네오콘의 출현과 '테러와의 전쟁'으로 미국은 보수화되어가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미국 사회 내부에

서 확고히 뿌리 내린 다문화주의는 미국사회를 돌이킬 수 없이 보다 열린사회로 바꿔놓았다.

이런 여건이 바로 카타리나 피해로 흑인들이 불만을 터뜨렸어도 파괴적 폭동으로 내닫지는 않았고, 9.11 재앙 이후에도 무슬림들에 대한 집단폭행은 거의 없었던 건전한 사회의 인프라를 조성했다. 9.11 사태가 일어난 지 이삼일이 지나지 않아 부시는 무슬림 무스크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무슬림계 미국인에게 보복적 폭행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민간단체들도 무슬림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반세기간 미국사회에 스며든 다문화주의의 놀라운 성과였다. 3,000명이 갑자기 산화해버린 어이없는 일에도 이성을 잃지 않는 세련된 시민정신을 보여주었다. 아직도 미국에는 풀어야 하는 소수민족 문제가 널려있다. 그러나 뉴올리언스 재건으로 미국의 건설 자재와 인력이 품귀현상을 맞을 정도로 부시 정부가 적극성을 보이자 흑인들도 인내심을 갖고 정부의 대책을 수용하고 있다.

근래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고 그 협조자를 형사처벌 하려는 새로운 이민법 수립을 둘러싸고 이에 반대하는 히스패닉과 지지하는 흑인과의 갈등이 심화되어가는 조짐이 보임으로써, 미국에서 인종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떠오르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테러리스트들이 불법체류자에 섞여있기 쉽다는 불안감, 인구 구성비에서 히스패닉이 14%로 증가하면서 흑인을 누르고 제1위의 소수민족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또 천만 명이 넘는 불법체류자 가운데 상당수가 멕시코에서 넘어오고 있는 현실이 맞물려 이

훌륭한 다문화 사회를 이룩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된다. 의사소통, 교육, 취업, 병역, 경제적 자립도, 사회적 수용,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우선 풀어야 할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 가정에 대한 생계안정과 자녀교육이다.

민법을 둘러싸고 흑인과 히스패닉계 사이에 대립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런 복잡한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미국의 인종폭동은 흑인과 새로 부상하는 이민그룹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남북전쟁기의 흑인과 아일랜드인의 대결, 20세기에 들어서서 흑인과 유대인의 갈등, 90년대의 한흑갈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전철을 돌아볼 때 앞으로 흑인과 히스패닉의 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다분히 있으나 이미 다문화주의가 성숙한 단계로 접어든 현 시점에서는 그 갈등이 보다 평화적으로 정착될 전망도 많다.

파리 근교의 인종 소요는 개인의 권리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플레랑스' 프랑스의 이미지에 가려져왔던 어두운 현실을 노출시켰다. 미국도 민권운동 이전에는 흑인문제는 사회 일각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묻혀있었다. 미국 국민은 자국의 부와 힘에 도취되어 미국이 지상천국인양 의기양양 했었다. 민권운동은 미국의 치부를 드러냈고 미국은 '적극적 차별철폐정책'으로 이 문제를 정말 적극적으로 풀어나갔다. 프랑스는 인종소요에서 초기의 강경대처와는 달리 다행이도 소수민족의 사회통합이라는 정책으로 가닥을 잡아나가는 양상을 보인다. 프랑스의 지성 기소르망

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프랑스는 미국의 적극적인 차별철폐정책을 본받아야 한다. 이는 유럽의 모든 국가는 물론 한국계가 많이 거주하는 일본에게도 해당되는 사안일 것이다.

다문화 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인즈 워드는 우리나라에 다문화라는 화두를 제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동안 사회의 관심에서 등한시 되어왔던 혼혈인과 국제결혼의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국제결혼은 2003년에는 8.4%에서 2005년에는 13.6%로 증가 일로에 있다. 특히 농업과 어업관련 종사자들 사이에 국제결혼은 지난해에 35.9%였다. 대법원의 보고에 의하면 전국 249개 시·군·구에서 30%가 넘는 곳이 20여 곳이 넘는다. 혼혈 중에서는 특히 아시아계와 결혼하여 태어난 코시안들이 많다. 인구전문가들은 10-20년 안에 혼혈인은 우리 사회에 변화를 가져다주는 주요 요인으로 떠오를 것으로 내다본다. 그들은 도시빈민층을 이룰 수도 있고, 정치세력화 될 수도 있고, 국제교류에서 가교역할을 할 수도 있으며,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의

폭을 넓힐 수도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지금 다문화·다인종 사회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많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우리 근로자가 해외에 파견된 지도 오래 됐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우리의 산업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노동력을 제공한다. 문화면에서도 비와 미셸 위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의 100인 대열에 들었다. 사실 날로 늘어나는 국제적 교류를 감안한다면 이제야 다문화주의와 혼혈의 문제가 불거진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사실 대한민국의 탄생마저 유엔이라는 국제적 산실에서 국제적 총아로 태어났던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여태 까맣게 잊고 있었나보다. 어찌면, 우리를 오래 짓눌러 온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와 일제강점에 대한 한풀이로, 세계화 시대에도 오로지 민족주의의 화두에 매달려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국내거주 소수민족을 배척하는 풍토가 순혈주의 문화에 대한 맹신 때문이라는 시각이 요즘 확산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전혀 불식하고 국제적으로만 되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는 우리 고유의 문화와 가치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인보다도 미국인보다도 일본인보다도 틀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이 될 수가 있다. 마치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건국이념과 국가적 자부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 여러 민족과 인종이 어울려 사는 다문화 사회를 이루듯이, 우리도 열린 시각으로 외국인을 수용하면서 우리 문화를 더욱 계승 발전시킨다면, 다양한 색깔이 어우러져 재정립된 우리 문화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증폭할 수가 있다.

훌륭한 다문화 사회를 이룩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된다. 의사소통, 교육, 취업, 병역, 경제적 자립도, 사회적 수용,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우선 풀어야 할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 가정에 대한 생계안정과 자녀교육이다.

외국인 부모와 자녀들에 대해서는 무상 한국어 교육이 우선 시급한데, 당사자는 물론 부모가 언어 소통이 잘 안되면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낮게 되어 국제 가정의 아동들은 학습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민자에게 한국어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한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서 본받으면 유익할 것이다. 지금은 이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예전의 사적인 영역에서 공교육으로 대부분 흡수되어 소위 지자체가 출자하는 '칼리지'라 불리는 지역대학(communitary colleges)에서 미국시민 소양교육과 영어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도 구민회관이나 마을회관 같은 사회복지관, 또는 공립 고등교육기관의 부설기관 같은 곳에서 소수민족을 위한 무료 시민교육을 활성화 시킨다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혼혈인들은 취업난에도 시달린다. 정부는 미국이 '적극적 차별철폐정책'에서 추진하듯이 취업에 있어서도 우대조치를 도입해서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들의 취업을 증진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취업할 당제는 여성과 장애인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목표이다. 여기에 혼혈인까지 포함되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으로 보아 온당할 것이다.

민간차원에서 이문화의 수용과 이해를 증진하는 계몽과 학습도 필요하다. 워드가 미디어의 관심을 받으며 혼혈인에 대한 대중 인식의 폭을 넓힌 경우와, 필리핀 혼혈아동이 많이 있는 전북 장수초등학교의 모범적 사례를 보면, 그 가능성도 높다. 그 학교는 전체 350명의 학생 중 20명이 혼혈아이다. 그러나 누구도 '왕따' 당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그것은 학교의 세심한 배려 위에 교사와 학부모가 유기적으로 교류하기 때문이다. 이 학교는 혼혈아에게 단짝 도우미를 맺어주어 그들이 외톨이가 되지 않게 하고 한글학습을 도와주고 있다. 외국인 어머니는 영어와 일본어를 가르치는 외국어 강사 역할을 맡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정부와도 손을 잡고 전통 풍습, 예절, 문화를 배우는 체험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워드의 방문으로 정치권은 앞 다투어 혼혈인 문제를 떠올리며 국내 소수인종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그들에 대한 복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국회는 여야 모두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차별 금지, 혼혈인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법률 제정에 곧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도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주재로 의사소통과 빈곤의 문제, 이문화(異文化)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사회통합대책을 4월 말까지 발표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지방선거와 더불어 여러 가지 긴박한 현안들 때문에 다문화 관련 문제는 미루어지는 것 같다.

약속했던 대로 워드는 5월 26일에 혼혈아 장학재단을 만들기 위해 다시 귀국한다고 한다. 그즈음에 가서야 다시 다문화 관련 현안이 탄력을 받고 논의·추진될지 모르지만, 그가 일깨워준 다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우리가 다문화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적극적 차별철폐정책' 등 미국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미국이 민권법과 '적극적 차별철폐정책'을 수립할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 또 여야 모두에서 다문화주의를 수용해야한다는 공감대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적극적 차별철폐정책'이 행정부 주도로 조속히 수립되어 애매모호한 내용이 많아서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점을 감안한다면, 의회와 행정부에서 여론을 수렴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잘 정비되고 견실한 다문화 정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 문제와 다문화 교육¹⁾

김정원 |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외국인 근로자 수의 증가

Martin(2002)에 따르면, 출생지이거나 시민권을 가진 나라가 아닌 타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1990년 1억2천만 명에서 2000년에는 1억6천만 명으로 10년 사이에 약 33%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국제이주의 대부분은 세계 인구의 80% 이상이 살고 있는 저개발 국가에서부터 개발국으로 이주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는 공식적으로 국제이주자를 영주자로 받아들이는 주요 5개국이며, 이들 국가는 연간 120만 명의 이주자들을 받아들인다.

한국 역시 이주자 문제에서 더 이상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 있다. 법무부(2006)에 따르면 1995년 27만 명에 불과하던 체류외국인 수는 2005년 74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06년에는 불과 3개월 만에 6만여 명이

증가하여 2006년 4월 현재 80만 명을 돌파하였는데 (804,547명) 이는 전체 국민의 1.65%라 한다. 이에 체류외국인 100만 명 시대가 당초 예상했던 2010년에서 2006년 말로 앞당겨질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외국인이 한국으로 이주하는 목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취업이다(법무부, 2006b). 그리고 이들 대부분이 아시아계로부터 이주하는 외국인들이다(법무부, 2005).²⁾

한국사회의 실업률이 일정한 수준 계속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인력 부족 경향은 여전히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2005년도 중소기업제조업 인력부족률(4.35%)이 2004년도(5.06%)보다 0.71% 감소하고 있으며, 2002년 이후 계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라고 지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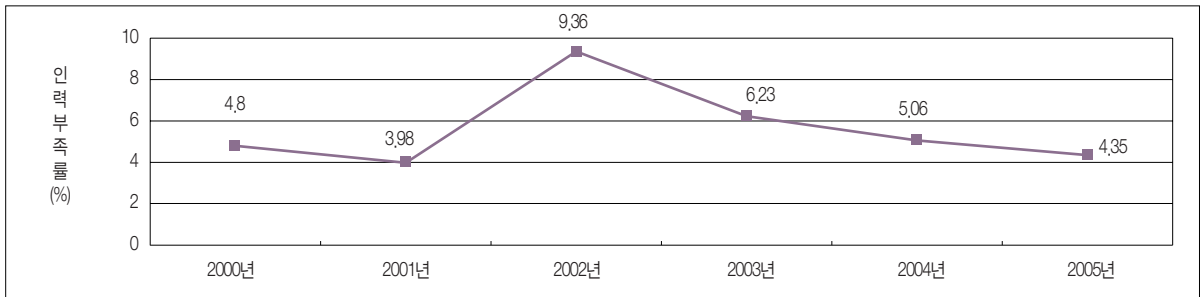
1) 이 글은 김정원·이혜영·배은주·허창수(2005).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복지 실태 분석 연구」의 주요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본 주제에 맞게 보완한 것임.

2) 결혼을 통한 이주자 역시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2002년도에 전체 결혼의 5.2%이던 국제결혼이 2005년에는 13.6%로 증가하였고 그중 농·어촌의 경우,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의 35.9%를 차지한다고 한다.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와의 결혼이 다수를 차지하며, 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자의 90% 이상이 아시아인이다(통계청, 2006: 12-14).

〈표 1〉 국적별 등록외국인 현황(명)

국 적		성 별		합 계
		남	여	
아시아주	한국계 중국인	57,091	71,196	128,287
	중국	46,143	33,893	80,036
	필리핀	16,253	11,681	27,934
	인도네시아	21,619	4,444	26,063
	베트남	16,609	9,444	26,053
	타이완	12,013	10,272	22,285
	타이	14,743	7,147	21,890
	일본	5,206	11,193	16,399
	방글라데시	12,659	419	13,078
	우즈베키스탄	9,387	2,138	11,525
	몽골	6,346	4,641	10,987
	파키스탄	9,015	211	9,226
	스리랑카	4,795	668	5,463
	네팔	4,631	669	5,300
	인도	4,123	655	4,778
	카자흐스탄	2,789	793	3,582
	미얀마	2,004	108	2,112
	이란	1,411	58	1,469
	캄보디아	991	297	1,288
	기타	1,707	965	2,672
소 계	249,535	170,892	420,427	
전 체	총 계	278,275	190,600	468,875

법무부(2005), 2004 출입국 통계연보, pp. 638-673에서 재구성



출처: 중소기업청(2006.2)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결과, p.4.

〈그림 1〉 연도별 인력부족률 추이

특히 산업연수생 제도와 최근 만들어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2004년부터 발효)에 의해 국내의 외국 인력 고용이 합법화되었다는 점이 외국인 근로

자 고용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허가제와 함께 2003년 시행된 4년 미만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조치’ (법 부칙 제2조)에 의해 많은 불

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받게 되어 2003년에는 등록 외국인 근로자 수가 전년에 비해 거의 2배 정도로 증가하였다.

향후 우리 사회에서 비숙련 노동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되는 가운데 저출산과 고학

력으로 인한 전체적인 노동력 인구가 감소하고 특히 비숙련 노동 인구가 감소할 전망에 있으므로 이를 대체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표 2〉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 수, 2002~2004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전 체	남 자	여 자
전 체	252,457	437,954	468,875	278,275	190,600
아시아주계	-	-	420,427	249,535	170,892

자료: 법무부, 『2004도 출입국통계연보』, 2005.

자녀와 함께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가정 유형

국내 외국인 근로자 수 증가와 함께 자녀와 함께 이주한 외국인 근로자 가정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몽골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은 가족이 함께 이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그들의 유목민적 성향과 높은 교육열에 의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자녀를 동반한 외국인 근로자 가정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양 부모가 자녀와 함께 이주한 경우, 편모 혹은 편부 가정, 모가 한국인 부와 재혼한 경우, 그리고 자녀 혼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첫 번째 유형인 부모가 자녀와 함께 이주하여 같이 생활을 하는 경우가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가장 일반

적인 유형인데, 이때 부모 모두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편모 혹은 편부 가정은,³⁾ 본국에서 부와 사별 또는 이혼한 후 모 혼자 한국에 입국하여 일하다가 자녀를 데리고 온 경우이거나 아니면 부모가 함께 왔다가 부나 모가 먼저 본국으로 돌아가고 부나 모 혼자 한국에 남아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경우이다.

세 번째 유형은 한국인과의 재혼가정이다. 재혼가정은 대부분 자녀와 함께 이주한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재혼한 경우이며, 그 역은 별로 없다. 이는 결혼을 위해 이주한 경우와는 구분되는 범주로서 본국에서 모가 부와 사별을 했거나 이혼한 후 자녀를 데리고 한국에 와서 살다가 한국인 부와 재혼한 경우이다.

3) 여기서의 편부, 편모 가정은 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부모 없이 혼자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도 있다. 엄격히 말해 이 유형은 현재 외국인 근로자 자녀라 말하기 어려우나 외국인 근로자였던 부모와 함께 체류하다 혼자 남은 경우이므로 이 유형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유형에는 부모와 함께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부모는 불법 체류자로 검거되어 한국에서 추방당하거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가고 자녀는 친척집 등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 한국에서 계속 공부하기 위해 부모가 본국으로 입국하고 난 후에도 혼자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부모와 함께 체류하는 경우나 편부 혹은 편모 가정의 경우에도 부모 혹은 한부모가 일자리를 찾아 거주지를 자주 옮기거나 자녀만 두고 외지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자녀들은 집에서 식사 등을 혼자서 해결하며 지내기도 한다. 더구나 부모가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일을 설 때도 많아 수입도 불안정하다.

그에 비해 한국인과의 재혼가정은 좀 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또한 한국인과 재혼한 어머니는 자녀와 함께 한국 국적을 갖게 되므로 이들은 완전히 한국에 정착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재혼가정은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등, 여타 한국인 가정과 '외형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외국인 근로자 가정과 구별된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 문제와 가정의 역할

1. 학교교육기회와 가정의 역할

한국 국적을 지닐 수 있는 재혼 가정 자녀 외의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게 국내 학교교육의 문은 점차 개방되고는 있으나 아직 그리 넓지는 않다. 이들에게 국내 학교 입학 기회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2001년도 개정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하면 외국인이 국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학교에 입학·전학, 혹은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그러나 고용허가제 하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이 합법화된 이후에도 한국에서의 취업 기간 중에 가족 동반은 금지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획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입국할 경우, 관광이나 다른 상용비자를 받고 입국하며, 부모가 먼저 한국에 와 있는 경우에는 브로커와 함께 입국하기도 한다. 브로커에 의해 입국한 자녀들은 브로커를 부모로 하여 입국하게 되는데 브로커가 출국하고 나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게 되거나 입국 시 이름과 생년월일도 바꾸는 경우가 있어 출입국 기록을 찾기도 어렵다(설동훈 외, 2003: 46-47).⁴⁾

이에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이 출입국 사실 증명서나 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어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 5월 학교 입학 시 해당 지역의 거주 사실을 입

〈표 3〉 최근 3년간 외국인 학생 현황(명)

구 분	초	중	고	계
2003년	570	191	76	837
2004년	615	207	99	921
2005년	995	352	227	1,574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2005), 국정감사 제출자료.

증하는 서류(전월세 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는 비중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학군 내 거주 사실 증명서만으로 입학할 허용한 이후 국내 학교에 재학하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한국이 비준한 UN의 '아동 권리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협약은 모든 아동이 사회적 출신과 관련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한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지니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의무교육을 개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기회도 능력에 따라 개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UN은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을 제정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의 체류 내지 취업이 불법이거나

그 자녀의 체류가 불법이라도 그 자녀는 그 나라 국민과 같이 평등한 처우에 기초하여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것인데 한국은 아직 이 국제법에는 비준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 학교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관련 지침 제공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령기 외국인 근로자 자녀 대부분이 학교 밖에 있다. 아직 국내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있는 학령기 외국인 근로자 자녀는 약 9,5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2).

이는 해당 지역 거주 사실만 확인되면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였음에도 현실적으로 학교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과 관련해서 학교들이 대응하는 방식은 지역별로, 학교별로 편차가 크다는 점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학교 입학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이들의 학교 입학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는 학교들도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분교와 같은 경우,

4) 특히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갖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 중 대부분이 몽골 출신이라고 한다(2003년 기준 약 78%, 설동훈 외, 2003: 6).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입학은 오히려 환영받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법적으로도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학교 입학이 학칙에 의거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가 허용하지 않으면 이들의 학교 입학은 가능하지 않다.

또한 상급학교 진학과 밀접한 졸업장 수여 여부 등 일반 학교생활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학교 마다 이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고심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 학교 간 편차가 크다. 입학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청강생 자격으로 학교를 다니게 하고 졸업장이 아닌 수료증을 주는 경우도 있다. 청강생 자격으로 중학교를 다니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는 일상 속에서 동료들과 분리되는 상황을 경험한다. 출석부의 번호 매기기, 시험성적 처리방식 등에서 이들은 항상 별도 관리 대상이다. 그러나 이나마 지역 내에 학교 입학할 수 있는 학교가 제한되어 있어 학교 입학이 허용된 것 자체가 큰 혜택으로 인식되고 있다.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부모는 자녀의 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어떠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다. 우선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거나 한 부모 가정인 경우, 시간을 내어 학교를 방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어 미숙과 한국 학교 제도나 학교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부모가 자녀의 학교 입학에 어떠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많은 경우, 주로 종교 단체인 외국인 근로자 지원 단체가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학교에 데리고 가서 입

학시키는 형식으로 학교 입학이 이루어진다. 이 지원 단체들은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입학을 위해 학교를 적극 찾아다니며 설득하기도 하고, 입학을 허용하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을 입학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2. 학교생활적응과 가정의 역할

일반 국내 학교에 입학한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은 학교 내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등 이들을 위한 공식적인 지원 체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스스로 적응하는 길을 찾아야만 한다. 경우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을 맡게 되는 담임교사의 개인적 관심에 의해 한국어 지도 등, 별도의 언어적, 심리적 지원을 받기도 한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는 대개 한국에 입국한 후 평균 1년쯤 지나 학교에 입학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학교 입학 전에 지원 단체에서 한국어를 배우기도 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혼자서 한국어 공부를 하기도 한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에서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한국어 능력에 따른 학년 배정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나이에 따라 학년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능력 중심으로 학년을 배정하고 있어 적게는 1년, 많게는 4년 아래 학년에 배치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로 하여금 학급 내 동료 학생들과의 신체적, 정신적 수준 차이로 인해 서로 어울리기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학교에 재학하게 된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은 학교에서 드러나지 않게 생활하면서 가시적인 문제를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 이에 교사나 동료 학생들은 이들이 별 문제 없이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 문제는 학교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지 않는다. 특히, 교과별로 서로 다른 교사가 학급에 들어오는 중학교에서는 외모가 한국인과 구별되지 않는 몽골 출신 학생의 경우, 그 존재를 교사들이 쉽게 인지하기도 어려워 담임이 아닌 교과 교사들은 오랫동안 이들의 존재를 모르고 지낼 수도 있다. 교실 수업은 학생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교사의 질문과 그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 때 말없이 앉아 있는 많은 일반 학생들에 묻혀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존재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동료 학생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들은 자신의 뜻을 내세우기보다는 친구들의 뜻에 “그냥 맞춰주고”, 놀림을 당해도 “그냥 학교에 있다가 오거나” 혹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하고 또 도움을 주는 몇몇 친구하고만 어울리기도 한다.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이 국내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있어 피할 수 없는 문제들, 예를 들어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교과 학습의 어려움, 교우관계 형성에서의 어려움, 학교규칙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문제들이 학교 내에서 문제로 부각될 만한 상황 자체가 조성되지 않는다.

문제들은 잠재되어 있다가 그것이 심화되면 가끔 말없이 학교를 나오지 않는 행동으로 표출된다. 이후에 아주 학교를 떠나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도 있다.

이 과정에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가정은 어떠한 역

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학교 입학 자체가 지원 단체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교의 담임교사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부모와 대면할 기회가 거의 없다. 또한 언어소통의 문제로 인해 전화통화도 거의 불가능하다. 부모들은 학교에서 전하는 알림장이나 가정 통신문의 내용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 부모가 일자리를 찾아 자주 거주지를 이전하여 자녀들이 학교를 자주 옮겨야만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은 더욱 어렵게 된다.

학교 교사들은 외국인 근로자 자녀 가정에 대한 정보를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교사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교사는 가정과의 연계 고리를 지니고 있지 못해 그 이유를 쉽게 파악하지 못한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정체성 갈등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 중에는 한국 사회와 학교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경우들이 있다. 이들은 학교 성적도 높고 학급과 학교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한국인 친구를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들이 한국의 학교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했다 함은 자신의 언어적, 문화적 정체성을 버리고 소위 “전형적인” 한국인이 되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응에 성공한 이들은 더 이상 그들 모국 언어나 문화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같은 조건의 친구들을 멀리한다.

저는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절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 몽골애들이랑은 잘 안 놀게

되요. 집에서는 몽골어를 쓰니까 몽골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깥에서는 완전히 한국 사람이예요. [외국인 노동자⁵⁾ 센터에는 예전에는 많이 다녔는데 요즘은 거의 안가요. 바쁘기도 하고. 이 학교 선배데 S공고 1학년 다니는 선배하고는 잘 만나요. 그 형도 한국 사람과 똑같아요(00중 외국인 근로자 자녀).

○○이는 몽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엄청 싫어해요. ---몽골어를 알려달라고 하면 거부해요.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한데---. 자기 나라 소개하는 것을 못 봤어요. 말을 꺼내면 화를 내고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했어요(위 면담자 학급 동료).

한국인과의 재혼가정의 경우, 자녀에게 출신 모국인으로서 언어적, 문화적 정체성을 버리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한국인 아버지는 모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모국 출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며, 초기 한국 생활의 적응을 도와주었던 지원 단체의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이는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말해요. 국적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알아봤더니 그제서야 '이제 한국사람 될 거라구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스스로 빨리 귀화하고 묻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외모는 이쁜 한국에 같은 분위기거든요.


..... (재혼한 한국인) 아빠가 돌보고 단속도 시키고 하는 것 같아요. '내 자식이 몽고인이라고 보이기 싫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일기에 가장 슬플 경우를 쓰라고 했더니 '아빠가 몽고말을 쓰면 민경이에게 "□□이는 안씨 집안이 되기 싫은가 보지?"라고 말할 때'라고 쓴 걸 본 적이 있어요(J초등학교 □□이 답임).

외국인 근로자 자녀는 가정에서 주로 모국어를 사용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의 한국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한국에 처음 입국한 시점에서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모국어를 쉽게 잊게 되며 그 때문에 모국어로의 귀환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본국으로의 귀환을 예정하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가 모국어를 잊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모국어를 가르치기도 한다. 그러나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치더라도 단순히 말을 가르치는 정도이며, 글쓰기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수준은 아니다. 이들은 자녀에게 모국어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기를 원하지만, 대부분 그것이 쉽지 않다. 가정에서의 모국어 교육은 대개 대화에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에 그친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을 지원해 온 민간 지원단체들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과 모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 전국 150여 개의 외국인 근로자

5) []안은 필자



외국인 근로자 자녀는 가정에서 주로 모국어를 사용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의 한국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한국에 처음 입국한 시점에서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모국어를 쉽게 잊게 되며 그 때문에 모국으로의 귀환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지원 단체 중,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 영역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몇 되지 않는다. 이 단체들이 이들 자녀의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과정은 거의 유사하다. 모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에서 출발했다가 그들의 자녀에 대한 지원으로 관심을 확대해 온 경우들이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의 학교 입학이 용이하지 않았을 시기에 지원 단체의 역할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후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의 학교 입학이 보다 용이하게 되자 지원 활동의 초점은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지원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 때 가장 핵심적인 지원은 한국어 교육과 교과보충지도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의 언어적, 문화적 정체성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지원을 전환하고자 하고 있다. 가장 단적인 예가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에 학교의 요구에 의해 한국식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였는

데 일부 지역 지원단체는 본국 이름을 한글로 표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요구하여 받아들여지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전에는 한국이름으로 다 바꾸자고 했었어요. 아마 K중학교에 가도 마찬가지로 일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입학할 때) 같이 가게 되면, 최씨가 되고, 태희라고 있는데, 그 태희는 이 태희예요. 우리 사무실 직원이 이씨였거든요. 그 직원이랑 같이 가서 당장 이름 지으라니까 어떡해, 이태희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최근에 와서야] 알마티, 빌, 찰리, 토야가 입학 시기가 같아요. 거의. 이때는 학교 측하고 이야기해서 '왜 아이들이 이름을 바꿔야 하는냐, 자기 이름을 그대로 한국식으로 표현해서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알마티, 빌, 토야, 찰리 이렇게 자기 이름을 쓰도록 했구요.(경기 지역 외국인 노동자 센터 국장).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최근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표방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자녀 등 우리 사회에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들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을 위해서는 국내 학교에 한국어 반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담당하기 위한 교사 양성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며, 결혼을 통한 이주자에 대한 교육 및 그 자녀에 대한 정체성 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관심은 그 자체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징표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정책들, 나아가 앞으로 개발될 여타의 지원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을 동등한 사회적 주체로 인정하고 그들과 상호 소통하고자 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개방적 자세이다. 이들을 둘러싼 가장 큰 장벽은 언어나 문화의 차이 그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차이의 차별화이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한국 사회와 한국 학교생활에 잘 적응했다는 것이 모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그리고 한국인과의 재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모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도록 강요받는 것은, 그들의 언어와 문화가 기존의 한국어나 한국 문화와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차이에 의해 차별되지 않고 차이로서 서로 소통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문화 교육 기반이다.

다문화 교육은 주류문화 중심적인 학교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비주류 문화를 포함시키는 데서 출발한다. 최근 정부도 2009년부터 개편되는 초, 중, 고 교과서에 다문화 지향적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2006. 4. 6.).

하지만 다문화 교육은 비주류 문화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다양한 인종과 문화 관련 내용을 학교에서 다룬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기존의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개념, 패러다임에 대해 질문하고, 도전하며, 재해석할 것을 지향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다문화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나 그들 자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교육이다. 뱅크스와 뱅크스는 다음과 같이 다문화 교육을 정의하고 있다.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사회계층적, 문화적 기반을 지닌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탐구 영역이자 새로운 학문 영역이다. 이것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모든 학생들에게 다양한 집단들과 함께 상호작용하고 협상하고 상호의사를 교환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 등을 획득하도록 하여 공공의 선을 위해 작동하는 시민 사회, 도덕적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있다”(Banks & Banks, 1995: xi-xii).

즉, 다문화 교육의 관심은 외국인인을 비롯하여 경제적 저소득층, 여성, 장애인, 등 비주류 집단의 문화와 역사가 그 사회의 주류 문화와 소통하도록 하는데 있다. 문화 간 소통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기존의 관점과 지식에 대해 질문하고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도록 하는 것이 다문화 교육의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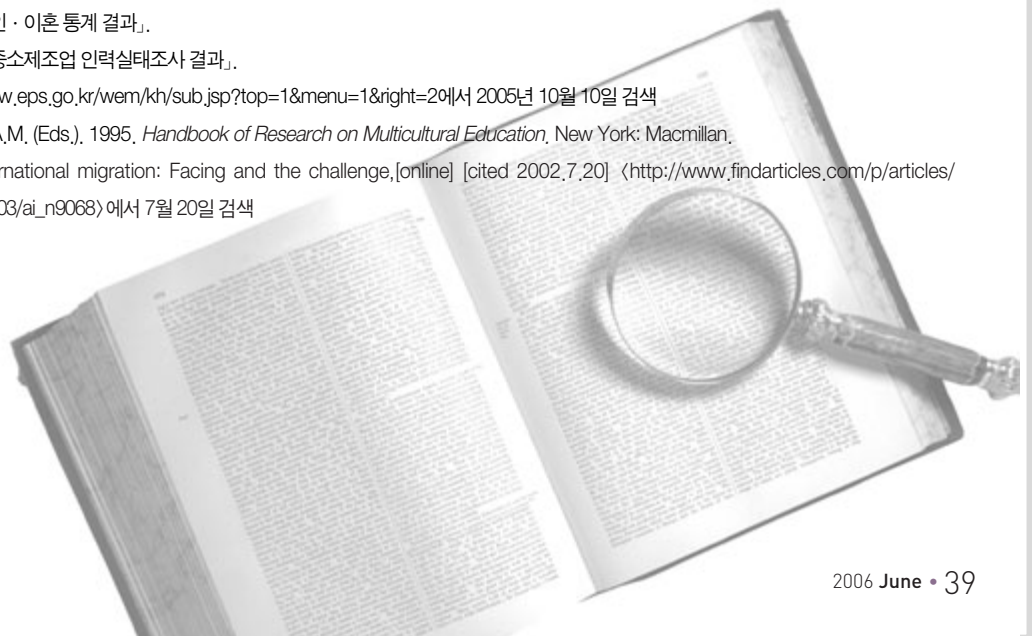
이러한 차원에서 다문화 교육은 관점 전환의 교육이라 할 수도 있다.

다문화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새롭게 형성되거나 혹은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취약계층 자녀들이 자신의 출신 배경 언어나 문화, 혹은 신체적 특성 등을 스스로 드러내고 관련 소양을 키워가는 가운데 이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한다는 것은

세계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준이 상호 소통하며 공존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하며, 우리 사회에 점차 확대되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비롯한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지원은 그러한 의미에서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 참고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교육부 2006년도 주요 업무 계획』.
- 김정원 · 이해영 · 배은주 · 허창수. 2005.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복지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2005-5.
- 법무부. 2005. 『2004년도 출입국 통계 연보』.
- 법무부. 2006. 『출입국 관리행정 변화 전략 계획』.
- 법무부. 2006. 『체류외국인 급증, 금년 내 100만 시대 열려』, 출입국 관리국 보도자료, 4월 17일.
- 설동훈 · 한건수 · 이란주. 2003.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 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통계청. 2006. 『2005년 혼인 · 이혼 통계 결과』.
- 중소기업청. 2006. 『2005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결과』.
-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eps.go.kr/wem/kh/sub.jsp?top=1&menu=1&right=2>에서 2005년 10월 10일 검색
- Banks, J.A., & Banks, C.A.M. (Eds.), 1995. *Handbook of Research on Multicultural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 Martin, Philip. 2002. International migration: Facing and the challenge, [online] [cited 2002.7.20] <http://www.findarticles.com/p/articles/mi_qa3761/is_200203/ai_n9068>에서 7월 20일 검색





150-7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http://www.nanet.go.kr>